

# 인터넷 지식거래소와 저작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net Knowledge Markets and Copyright Issues in Korea)

노영희(Younghee Noh)\*

## 초 록

본 연구는 현재 상업적인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저작권법에 비추어 분석하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제공주체와 지식거래소간에 이루어지는 저작물의 상업적인 거래에서 정작 원저작자인 개인 저자들은 빠져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원저작자가 저작권 이양 동의를 통하여 2차적 저작물 생성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물의 디지털화, 원문DB화 및 지식거래소를 통한 유통 등은 저작권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copyright issues regarding the knowledge content currently circulated through knowledge exchange markets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ntent providers of knowledge exchange markets comprise government & public institutions, full-text database companies, publishers and individuals. It is worth noting that commercial trade of copyrighted content or material among academic journals, database companies and knowledge exchange markets essentially exclude individual authors who are the actual copyright holders. In principle, the original author owns the copyright whether it has an explicit notice or not. Unless the author/owner officially agrees to transfer the copyright including the right for so-called "derivative works", content-making based or derived from the copyrighted material, digitalization of the copyrighted work as well as its registration on full-text database and circulation through knowledge markets are illegal.

Key Word: 지식거래소, 저작권법, 학술지 논문, knowledge market, copyright law, thesis article, academic journal

---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irs4u@kku.ac.kr)

## 1. 서론

2000년대 초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한 인터넷 지식거래소는 한 때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진호 2005), 각각의 지식거래소는 다른 지식거래소와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컨설팅정보, 기독교자료, e-비즈니스 지식, 서식 전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자료 등으로 특성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이들 지식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지식정보량은 중간정도 규모의 지식거래소 9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을 때 1천 3백만 건으로 나타났다(노영희 2007). 물론 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 양에 있어서 KERIS 학술정보 구축현황에서 종합목록DB 구축 건수가 5,100여만 건<sup>1)</sup>이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서지DB 구축건수가 600여만건<sup>2)</sup>, 그리고 국회도서관의 소장DB 구축건수가 480여만권, 원문정보DB 구축건수가 130여만건<sup>3)</sup>임을 볼 때 지식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콘텐츠 수가 국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다<sup>4)</sup>.

이렇게 많은 지식콘텐츠들이 지식거래소에 등록될 때,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작성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료등록시 거치게 되는 간단한 동의절차만을 통해 등록이 되고 있고,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매우 낮으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은 정보제공자에게 지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시스템을 거의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DRM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도 저작권 제어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노영희 2007).

이와 같이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되는 지식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DRM을 비롯한 어떠한 기술적인 조치도 없이 지식콘텐츠들이 판매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시에 그 해결방안도 상당히 지식거래소 중심으로 해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헌정보학분야에서는 저작물이 도서관에서 공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연구, 즉 저작재산권의 제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보자료가 디지털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복제와 공정사용에 대한 연구를 주로 수행하여 왔다(홍재현 1997, 2004, 2005; 황찬현 1997; 김윤명, 정준민 2002; 유수현, 한상완 2004).

그러나 반대로 개개의 도서관에 의해 수십 년간 구축된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에 인터넷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도서관에서 구축한 정보들이 활용되고 거래되는 상황을 볼 때 한번쯤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지식거래소를 통한 정보유통은 정보의 활발한 교류 및 제 2의 창작에 밑거름이 된다는 측면과 원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권을 보호한다는 측면 모두에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한창 활성화되고 있는 지식거래소 정보의 저작권문제를 논하는 것이 조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식정보유통의 양성화를 위해, 그리고 언젠가는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지식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지식거래유형을 살펴보고, 지식거

1) [http://www.keris.or.kr/division/sum/sum\\_index.jsp?layerNo=divleft5](http://www.keris.or.kr/division/sum/sum_index.jsp?layerNo=divleft5)

2) <http://www.nl.go.kr/>

3) <http://www.nanet.go.kr/>

4) 국내에서 가장 큰 지식거래소인 네이버지식시장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래소에 적용될 수 있는 저작권법을 기반으로 각각의 지식거래유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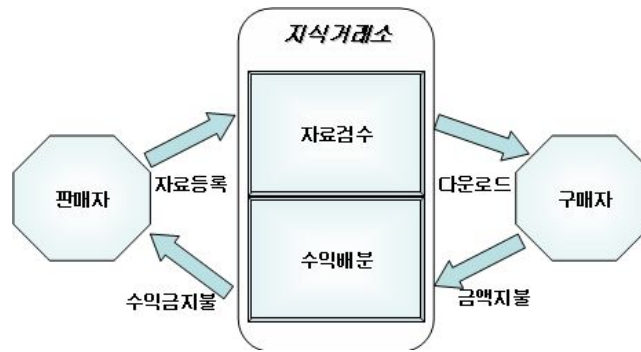
## 2. 지식거래소의 지식거래 유형

지식거래소는 인터넷을 포함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지식을 거래하는 곳을 의미하고, 특히 인터넷 지식거래소는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거래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지식시장’, ‘지식거래시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고 있으나 ‘지식거래소’라는 용어가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영희 2006). 지식거래소는 일반적인 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다. 즉 지식을 구매하는 사람과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거래소)가 있다. 지식거래소에서는 개인 및 기업, 여러 지식정보유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에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하고 또 필요한 지식이 있으면 누구나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식거래소는 수요자와 판매자가 원활하게 지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능과 장소를 제공해 주고, 중재, 결제 대행 및 판매 대행 등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여러 지식거래소 사이트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식거래시장에 지식을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공공기관, 대학의 연구소, 일부 도서관·정보센터, 원문DB 구축업체, 정부기관, 또 다른 지식거래소, 출판사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거래소에서 지식정보가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첫째, 지식거래소에 가입되어 있는 판매자가 본인이 창조성을 가지고 작성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료를 지식거래소에 등록한다. 판매자는 자료등록 단계에서 자료에 대한 설명, 가격, 파일 등을 입력해야 한다. 둘째, 자료등록이 완료되면 지식거래소에서는 등록된 자료에 하자가 없는지, 저작권문제는 없는지, 편집 상태나 기타 자료상태 등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서비스 사이트에 정식으로 등록한다. 이 때 문제가 있다고 판정된 자료는 그 사유와 함께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보류하며, 등록 보류 사유를 확인하고 등록자가 수정한 경우에 또 다시 수정된 부분에 대해 재확인을 거쳐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셋째, 자료가 정식으로 등록되면 다른 회원들이 그 자료를 검색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회원이 구매를 결정하고 자료에 대한 가격을 결제한다. 넷째, 판매된 자료에 대해 지식거래소와 판매자간의 수익배분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판매대금 중 일정한 금액이 거래수수료로 지식거래소에서 공제되고 나머지는 회원에게 지불된다. 지식거래소에서의 일반적인 지식정보유통구조는 아래 그림과 같다(노영희 2006).



<그림 1> 일반적인 지식거래 구조

### 3. 지식거래유통과 관련된 법률

저작권법의 제정 목적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을 창작 또는 시각을 통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에 대하여 부여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인 것이다.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가 가지는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이 있다.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이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자신의 명예나 평판 등 인격적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저작재산권에는 저작물을 인쇄, 사진, 녹음 등의 방법으로 복제할 수 있는 복제권과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및 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있으며, 각 권리의 개별적인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저작인격권에는 저작물의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곧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타인에게 알릴 것인지 말 것인지(공표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공표된 저작물에 자신의 창작품임을 표시(성명표시)할 수 있으며, 또 자신의 창작품에 대해 타인이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을 금지(동일성유지)시킬 수 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하는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를 말하며 실연, 음반, 방송에 그 권리가 있다. 즉 일반 대중이 저작물을 향유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최초로 음악이 만들어질 때에는 작사, 작곡, 편곡자들이 곡을 만들고, 이는 저작행위로 저작권에 속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가수에 의해 실연이 되고, 음반제작자에 의해 음반이 만들어지게 되어 판매가 되고, 방송사업자에 의해 방송이 된다. 저작인접권은 이러한 가수의 실연권,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방송사업자의 전송권 등을 저작권법 상에서 보호하는 것이다.

인터넷의 발전, 이를 기반으로 활성화된 지식거래소의 지식도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지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지식과 관련된 법은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DMCA 등이 있다.

#### 3.1 저작물과 저작권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sup>5)</sup>.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저작자는 저작물 창작과 함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sup>6)</sup>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sup>7)</sup>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 22조의 규정<sup>8)</sup>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저작인격권에 따라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않을 권리,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는 저작재산권에 포함되는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및 이용권 각각에 대해, 그리고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각각에 대해 사용목적별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3.2 디지털화권

디지털화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단순히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불과하다. 이러한 디지털화가 복제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복제의 정의에서 복제를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서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디지털화 행위는 저작권법상의 복제에 해당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저작권법 제 2조 22항).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디지털화 하였다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 제 16조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 3.3 공중송신권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우는 것은 홈페이지에 접속한 이용자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서버로부터 저작물이 송신되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이다<sup>9)</sup>. 이러한 행위에 대

5) 저작권법 제 2조 1항 및 2항. 본 연구는 2006년 12월 28일에 전부 개정되어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 8101호를 기준으로 한다.

6) 저작권법 제 10조(저작권법).

7) 저작권법 제 39조(보호기간의 원칙).

8) 제 22조(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9) 저작권법 제 2조 7항.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 2조 10항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 18조에서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저작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방송 및 전송, 새로운 융합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인 ‘공중송신’을 신설함으로써 저작자는 새로운 형태의 저작물 이용형태가 등장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0)</sup>. WIPO의 저작권조약도 공중송신권(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이라는 개념을 두고 있으며<sup>11)</sup> 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신 전단계의 이른바 통신망에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러한 규정은 기존 베른협약의 공중전달권의 개념을 확대하여 저작물이 통신을 통해 송신되는 디지털시대의 이용현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정국환 외 1997).

지식거래소와 관련해서 볼 때, 거래되는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중의 하나인 공중송신권을 이양 받아 거래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 3.4 무방식주의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sup>12)</sup>. 이와 같은 입법주의를 무방식주의라 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독일 및 프랑스가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베른조약도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미국의 구법과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는 저작권의 발생에 저작물의 납본이나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방식주의를 택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자의 편의를 위해 WTO/TRIPs 협정에 의해 저작권의 발생은 무방식주의에 의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식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지식들은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3.5 제한적 비친고죄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개정 전까지 완전 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제한적 비친고죄를 채택하고 있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를 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이고, 비친고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경우이며, 제한적 비친고죄는 예외 사항을 두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경우이다. 국내에서 비친고죄를 채택하기 전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반대론자들은 비친고죄 규정 도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심화영 2005), ①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친고죄의 상태에서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고, ②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으며, ③상표권과 저작권을 동일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④ 저작물 이용범위의 지나친 규제와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억제해야 하며, ⑤법안의 모호한 표현에 의한 법적용 대상 확대가 우려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200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이전의 완전 친고죄를 버리고 제한적 비친고죄를 적용한 배경을 다음과

10) 제 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1) WIPO 저작권조약 제 8조(공중송신권)에서는 어문저작물 및 예술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장소 및 시간에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의 수단에 의하여 당해 저작물을 공중에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는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12) 제 10조(저작권) ①저작자는 제 11조 내지 제 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 16조 내지 제 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인터넷 환경 하에서 저작권 침해가 대규모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적 피해가 심각하나, 저작자인 '개인'이 그 침해사실을 일일이 알아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영리적 또는 상습적인 침해에 대해서는 비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하는 인터넷기업들은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하더라도, 일단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고수익을 올린 뒤 수익금의 일부를 권리자에게 주고 합의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합법적으로 저작권 처리를 하고 사업을 하는 업체보다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비친고죄로 처리하도록 하였다.

셋째, 최근 일부 권리자의 경우 친고죄의 특성을 악용, 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를 남발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법률회사들이 성업 중이므로 비친고죄 확대를 통해 일부 시정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2006년 개정 저작권법).

### 3.6 이용허락

원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용되는 경우, 즉 양도받은 자가 계약상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벗어나 그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sup>13)</sup>.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를 예로 든다면,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 배포를 허용하였다 할지라도 논문이 원문DB로 구축되어 배포되거나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배포되는 것은 양도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이용허락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회가 원문DB 구축자에게 학회지의 논문을 원문 DB로 구축하여 도서관 및 정보센터에 배포되는 것은 허락하였을지라도 지식거래소를 통해 논문단위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허락관계를 어겼다고 할 수 있다.

### 3.7 원저작자의 권리

인쇄매체로 출판된 저작물은 디지털형태로 제작되어 전자책이나 또는 DB에 통합되어 복제, 배포되거나 또 다른 매체에 수록되어 배포되기도 한다. 이 경우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속되는가 아니면 이용자는 매체변환을 할 때마다 원저작자의 이용허락을 계속해서 받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저작권법 제 45조<sup>14)</sup>에서는 원저작물의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라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13) 제 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14) 제 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 22조의 규정에 따른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있다.

이로보아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의 매체변환과정을 통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매체변환이 이루어지거나 2차적 저작물이 생성될 때마다 원저작자로부터 이용 권리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할 경우나 정부기관에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연구자가 학회나 정부기관에 모든 권리를 이양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이양하였다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생성 권리를 특약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학회나 정부기관은 DB제작자에게 DB로 제작되는 것을 허용했을 지라도 그 DB가 구축되어 지식거래소와 같은 곳에서 거래되어 개개의 저작물이 판매되는 것을 허용했는지도 검토를 해야 한다. 현재 거의 모든 학술저작자는 학술DB로 제작된 본인의 저작물이 지식거래소에서 고가에 판매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판매된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받은 바 없다.

요컨대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도서, 학술지, 논문, 보고서, 회의록 등의 전문을 수록한 전문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각 저작물의 저작자나 출판사 또는 발행기관 등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국내 학회지에 수록된 회의록, 교내 교수들의 논문, 기술보고서 등의 전문을 입력하기 위하여 학회나 기타 저작권자로부터의 이용허락을, 특약이나 조건을 명시한 서면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두영 외 1997)

### 3.8 공공정보자료의 저작권

국내 저작권법은 법령이나 관례, 고시·공고·훈령 등과 같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 저작권법 제 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에 의해 1)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 1호 내지 제 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의 목적상,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위 규정에 속하지 않는 공공정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 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에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따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고 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역시 그들의 업무상 작성된 모든 공공정보에 대하여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민간이 공공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과 개별적인 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한다.

공공기관은 그 소관 하에 있는 각종 공공정보를 소유하며, 임의대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지만 공공기관의 공적인 의미 및 역할을 고려할 때, 국민의 세금에 의해서 공적인 업무 수행으로 제작된 각종 정보에 대해서 국민이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sup>15)</sup>하여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15)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6호, 시행일 2006.7.1.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단순 열람이나 복사에 그칠 뿐,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재이용을 통한 상업적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조소연, 안계성 1999).

### 3.9 데이터베이스와 저작권

#### 1)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EU 지침은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적 수단으로 또는 기타 수단으로 개별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체계적 또는 조직적 방법으로 배열된 독립된 저작물·데이터 기타 자료의 수집물”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미국에서는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나의 장소에 또는 하나의 출처를 통하여 정보의 독립된 항목들을 집적할 목적으로 수집되고 조직된 정보” 또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자에게 독립된 정보의 항목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할 목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투자 또는 기타의 투자를 하여 하나의 장소에 또는 하나의 출처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집되고 조직된 정보의 독립된 항목들의 대규모 수집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조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정의규정들에서 공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요건을 도출해 보면 데이터베이스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한 저작물 기타 정보의 수집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2) 데이터베이스의 창작성과 저작권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이나 기타 정보를 수집하여 조직한 수집물이라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2006년 개정저작권법 및 세계의 많은 법들이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데이터베이스를 많은 노력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저작권법 내에서 편집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으며<sup>16)</sup>, 특히 그 소재의 선택, 정리, 배열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Feist 판결을 통해서 명백히 하였다.

Feist사건<sup>17)</sup>은 종래 미국법원이 취하고 있던 ‘이마의 땀(sweat of the brow)’ 이론<sup>18)</sup>으

16) 미국 저작권법 제 101조, ‘기존의 자료나 데이터를 수집, 조합하여 저작물로서, 자료나 데이터를 선택, 정리, 또는 배열하여 얻어진 저작물 전체가 독창적 저작물이 되는 저작물. 이 편집 저작물에는 집합저작물(collective works)이 포함됨.’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조 18항,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7) Feist사건에서 피고 Rural 전화사(Rural Telephone Service Company, Inc.; 이하 Rural사라 칭함)는 캔자스에서 리스트사회에 봉사하는 전화를 제공하는 공익사업체이다. 주법에 따라서, Rural사는 화이트 페이지(white 디지털콘텐츠)와 옐로우 페이지(yellow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전형적인 전화번호부를 발행한다. 이 회사는 전화 서비스를 받기위해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가입자로부터 전화번호부에 관한 데이터를 얻고 있다. 원고인 Feist사(Feist Publications, Inc.; 이하 Feist사라 칭함)는 Rural사의 전화번호부보다는 지리적으로 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지역의 전화번호부 발행을 전문으로 하는 출판사이다. Feist사가 요청한 11개의 다른 전화 서비스 지역에 대한 화이트 페이지 리스트의 이용허락을 Rural사가 거절했을 때, Feist사는 Rural사의 동의 없이 전화번호부로부터 필요한 리스트를 추출했다. 비록 Feist사는 Rural사의 리스트에서 많은 것을 변경시켰지만, 몇 개는 Rural사의 화이트 페이지와 리스트가 동일하였다.

로부터 탈피하였다. 편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보호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기존의 광범위한 보호 관행을 축소시켰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독자적으로 작성(independently created)되었기만 하면 창작성을 인정하던 종래의 입장에서 벗어나 창작성이 인정되기 위하여서는 나아가서 최소한의 창작성(at least some minimal degree of creativity)을 필요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편집저작물 또는 사실의 편집저작물 창작성의 기준으로서 노력과 자본의 투입 여부라고 하는 기존의 기준을 버리고 구성사실 및 정보(facts)의 선택, 정리 또는 배열이 창작적인가의 여부를 그 기준으로 채택함으로써, 편집저작물의 창작성의 기준에 관한 항소법원들의 상호 모순되는 판결들에 대해서 중대한 결론을 제시해 주었다. 결국 경쟁관계에 있는 편집저작물이 동일한 선택, 정리, 배열을 구성하고 있지 않다면 동일한 사실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서 침해할 수는 없게 된다. 즉 보호의 대상은 소재의 선택, 정리, 배열의 독창성 그 자체이지 소재 정보가 아니라는 것이다. Feist사건은 편집저작물의 창작성 기준을 명백히 해줌으로써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일본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과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저작권법 제 12조 2항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저작물은 데이터베이스로서 그 정보의 소재 또는 체계적인 구성에 의하여 창작성을 갖는 것은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법 제 2조 17항에서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로 규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성·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하 18, 19, 20항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sup>19)</sup>, 저작권법 제 4장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의 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일본은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법 하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독자적으로 개발된 서지DB의 저작권

일반적으로 단순한 서지적 사항 자체는 저작물성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문헌목록정보'의 서지정보를 이용하여 서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가능하다(이두영 외 1997). 그러나 각 서지사항이 일정한 분류체계에 따라 배열되고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문헌의 취사선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것에 편집저작권이 성립된다<sup>20)</sup>.

### 4) 공용의 목적으로 개발된 서지DB의 저작권

18) 한 때 미국의 연방 법원들은 DB를 포함한 편집저작물의 보호 기준을 '이마의 땀'에 두었던 적이 있었다. '이마의 땀 이론'을 최초로 적용하였던 사건은 '보석상의 주소 및 상표 목록'을 무단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던 Jeweler's Circular Publishing Co. v. Keystone Publishing Co. 사건에서였다. 이후 많은 사건에서 '이마의 땀 이론'이 인용되었었다. '이마의 땀 이론'은 한 마디로 저작자의 노동(labour)이 투여된 바 있지만 하면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19) 저작권법 제 2조 18항.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항.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항.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0) 저작권법 제 2조 17, 18항과 제 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공용의 목적으로 개발된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1982년 OCLC가 OCLC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시작되었으며, 1990년 미국의 의회도서관(LC)에 의해 방대한 LC MARC 파일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당시 OCLC는 주요 자산인 OCLC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기 위해 이익을 추구하는 제 3자에 의한 사용을 규제하고자 하였다(OCLC 1985).

OCLC는 대표적인 서지유틸리티<sup>21)</sup>로서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서지정보가 가지는 저작물성과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가지는 저작물성이라는 2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홍재현 1993). 일반적으로 서지DB에 수록된 개개의 서지데이터 자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국제적인 통례이지만 개별목록레코드는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개별목록레코드의 작성은 편목자가 전문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적 기술 및 지적 판단을 통하여 작성되므로 개별목록레코드는 원저작자의 저작물로서 충분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이두영 외 1997).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편집저작물<sup>22)</sup>로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개개의 저작물과 관계없이 그 전체에 대해서 독립된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따라서 서지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가 편집저작물로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즉,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고 제작자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제작, 갱신, 검증, 보충에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는지는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다수의 기관에 의해 구축된 서지 데이터베이스는 참가기관이 공동의 저작권을 갖는 공동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참가기관의 기여에 의해 제작된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개별 서지레코드 작성의 기여자들은 공동저작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홍재현 1993).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제 2조 21항). 이 경우 공동소유자와 같이 각 공동저작자는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와 제 3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 모두를 가진다<sup>23)</sup>.

21) 서지유틸리티(bibliographic utility)는 서지데이터의 공동작성과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회원도서관이 작성한 개개의 목록레코드를 제공받아 협력네트워크를 통하여 전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지정보제공기관이다.

22) 미국 저작권법 제 101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조 18항.

23) 제 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 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제 15조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 129조(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 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5) 원문DB 구축과 저작권

원문 DB의 구축시에 현재 저작권법에 의하면, DB에 입력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원문DB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원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법률분야 전문DB인 LEXIS의 경우 학술지를 출판하는 출판사가 전자출판에 관계되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각 호에 실린 기사들을 전부 DB에 입력하고 있으나 또 다른 법률분야 전문DB인 Westlaw는 원저작물의 DB 입력에 앞서 각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얻고 있다(이제환, 황혜선 1997). 원문DB에 수록되는 개개의 저작물은 DB로 구축되기 전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게 되며, 각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형태로 출판될 것에만 동의했을 것이므로, 또 다른 형태인 원문DB로 구축하는 행위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으며(저작권법 제 5조), 따라서 DB 구축에 앞서 개개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DB를 구축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가 원저자의 저작권에 관한 권리를 일일이 이양받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인저작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들 개인 저작자에게서 일일이 허락을 받거나 해당 저작자로부터 저작권 이용허락에 관한 권리를 위임받은 저작권 위탁관리단체나 용역단체, 혹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부터 허락을 받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저작물의 DB 입력과 이용을 위한 저작권 허락은 저작권 집중관리센터인 CCC(Copyright Clearing Center)를 통해 얻을 수 있으며 저작자들의 용인단체인 NWU(National Writers Union)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 6)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보호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편집물로 간주하고 있으며(저작권법 제 2조 17항),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과 유사한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같은 배타적 권리로서 보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sup>24)</sup>. 이는 1996년 3월 11일 채택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이 취하고 있는 보호 방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실질적으로 동 지침의 규정과 상당히 유사한 규정을 개정을 통해 마련하고 있다<sup>25)</sup>.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배포, 전송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에 의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미치게 되므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재산권도 일반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된다(저작권법 제 46조).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인격권을 가지며, 공표권(제 11조), 성명표시권(제 12조), 동일성유지권(제 13조) 등을 가진다. 따라서 저작권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저작자는 자신의 미공표된 데이터베이스를 공연, 방송, 전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표할 것인가의 여

24)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25)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공표할 때 성명을 표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이나 제목을 다른 사람이 저작자의 뜻을 거역해서 개변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도 가진다.

### 3.10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저작권

####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라 함)는 인터넷이 운용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이다.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는 것에 관한 OSP의 책임 내지 의무는 OSP가 침해자의 신원과 행위를 인식할 수 있고 이러한 침해를 인식하고 중지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에 기초한다. 그러나 OSP는 자신의 서버를 통과하거나 서버에 존재하는 수많은 파일을 감시하거나 침해파일과 그렇지 않은 파일을 구별하기 어려우며 인터넷상에서의 송신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이대희 2005). 따라서 OSP에 대한 침해방지 의무 내지 이에 대한 책임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도를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자와 저작권 침해자의 중간 위치에 있는 OSP가 일정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는 침해책임을 감면하고 있다(저작권법 제 102조<sup>26)</sup>,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34조의 3<sup>27)</sup>).

####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복제 전송중단

저작권법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 103조 1항).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프로그램저작권법<sup>28)</sup>도 유사

26) 저작권법 제 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27)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34조의 3(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2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 34조의 2(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은 프로그램이 정당한 권원없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복제·전송됨으로써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프로그램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 지체없이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프로그램

하게 규정하고 있음).

프로그램저작권법에서 ‘지체없이’, 저작권법에서 ‘즉시’ 중단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OSP가 복제·전송을 중단시키는 것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지체없이’, 와 ‘즉시’의 개념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2-3일 정도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본다(이대회 2005), 위의 법안은 저작권 침해상태를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복제·전송의 중단을 사실상 고의에 의하여 지연시킴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조장할 수 있는 OSP의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저작권 보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OSP의 입장에서는,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더라도, 복제·전송자의 요청에 의하여 복제·전송을 재개해 줄 수 있으며,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므로<sup>29)</sup>, 저작권자와 복제·전송자의 중간적인 입장에서 인터넷을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또한 복제·전송자의 입장에서,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후 OSP에게 자신이 권리가 있음을 입증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역시 권리주장자에게 부당하게 복제·전송을 중단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sup>30)</sup>,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하등 불리한 입장에 있을 수도 없을 것이다. 권리주장자도 부당하게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부담이 있으므로,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주장자, OSP, 복제·전송자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직시하여야 하는 것은, OSP는 절대로 저작권 침해자가 아니며 오히려 저작물의 시장을 형성시키는 주체일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존재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위의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이대회 2005).

OSP의 책임면제에 관하여 미국의 DMCA<sup>31)</sup>도 좋은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DMCA는, 이러한 동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OSP의 책임이 면제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i) 반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종료시킨다는 OSP의 방침(policy)을

---

램을 복제·전송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9) 저작권법 제 103조 6항, ‘정당한 권리 없이 제 1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0) 제 34조의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감면) ①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전송행위로 인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가 침해됨을 알고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려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등의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31)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1996년 채택된 'WIPO저작권조약'과 'WIPO실연 및 음반조약'의 이행, 그리고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저작권보호를 모색하기 위해 1998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온라인저작권을 강화하고 이를 방해하는 기술개발을 불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법은 제 1부에서 WIPO저작권 조약 및 실연·음반조약의 이행에 대해, 제 2부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 책임제한에 대해, 제 3부에서 컴퓨터 유지보수 목적의 복제에 대한 면책에 대해, 제 4부에서 기타 규정으로 저작권자의 기능 및 원격교육,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일시적기록물에 대한 면책 및 영상저작물의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상의무의 추정 규정에 대해, 제 5부에서 선택디자인에 대한 보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냅스터 소송과 관련되어 문제되는 부분은 '온라인 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것으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나 도서관을 포함한 디지털정보전달자(기관)에 의해 행해진 전송내용에 대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나 디지털 정보 전달자는 저작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는 내용이다.

즉, 복사기를 통해 누군가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복사기를 만든 업체더러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시행하며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ii) OSP는 저작권자의 표준적인 기술적 보호조치(standard technical measures)를 수용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되도록 하고 있다[§512(i)(1)]. 이러한 내용은 책임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OSP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저작권자에게 협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 4. 거래유형에 따른 저작권문제

##### 4.1 개인 제공 콘텐츠의 저작권

지식거래소에서는 누구든지 본인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할 수 있는 콘텐츠는 논문, 리포트, 시험관련자료, 취업정보, 이력서, 자기소개서, 프로그램, 표지, 각종 서식 등 종류에 제한이 없다.

과거에는 상위지식층의 몇몇 전문가만이 지식을 생산하고 그에 대한 보답을 심적 또는 물적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인터넷에 프로슈머로서 참가하여 지식을 생산하고 제공하고 있다. 그 중의 한 통로로서 지식거래소는 인터넷의 수많은 사용자들이 지식거래소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편리하게 사고 팔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며, 지식생산과 제공은 더 이상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개인거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지식시장에 저작권이 해결된 콘텐츠는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며, 그로 인해 이후에 빚어지게 될 저작권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시판중인 책의 일부, 교수의 강의실 강의록, 인터넷의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서들, 창작성이 없는 각종 서식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기 전에 지식거래소는 거래되는 콘텐츠의 분량에 영향을 주더라도 철저한 저작권 계약과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은 그 거래량이 줄어들더라도 향후 보다 건전한 지식정보유통을 위해 저작권 문제는 지식거래소가 자발적으로 반드시 해결하여 할 것으로 보인다.

##### 4.2 원문DB 구축업체 제공

학술지 논문의 원문 DB구축의 적법성과 학술지 논문의 지식거래소에의 제공의 적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문DB 구축업체가 DB를 구축하는 방법은 크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방법과 다양한 분야의 학회로부터 학술지의 논문을 받아 원문DB로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에서 거론하고자 하는 경우는 두 번째 방법이다.

학술논문의 저작자, 즉 연구자들은 저작물을 통해 영리를 얻기보다는 가능한 널리 이용되기를 바라며 여러 사람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출판사에 논문을 넘기지만 ‘저작권 이양 동의서’는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권은경(2002)은 학술커뮤니케이션<sup>32)</sup>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논의의 핵심이 영리적 출판사에 의한 저작권 점유에 있다고 인식하고, 미국 대학도서관과 학계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

32) 학술커뮤니케이션은 학술정보의 생산부터 이용까지의 전 고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학술정보의 생산자인 저자, 배포자인 학회 또는 출판사, 그리고 이용자인 도서관 혹은 개별 연구자들이 참여하게 된다.

동과 제안, 그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로써, 첫째 연구정보에 대한 저작권을 영리적 출판사가 보유함으로써 도서관의 정보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며, 둘째, 학문의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정보생산자인 교수, 대학, 학회가 저작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 셋째,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편집과 출판기능을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한 학술커뮤니케이션 방법이 개혁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그는 현행 학술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저작권에서 비롯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학술지는 독점적 성격을 지닌다. 동일한 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는 것은 연구자 및 학계의 오랜 관행<sup>33)</sup>이므로 저널은 나름대로 고유한 논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으며 독점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영리적 출판사 혹은 원문데이터베이스 회사는 저널을 출판할 경우 독점적 성격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격을 상승시키려 한다(신은자 2001). 결국 지나친 가격을 부과함으로써 도서관 혹은 이용자들을 이용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저작물을 통하여 영리를 취하기보다는 가능한 널리 인용되기를 바라는 연구자들의 원래 의도(정경희 2002, 387)에서 벗어나 논문의 광범위한 이용과 인용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저널의 출판을 영리적 출판사(영리적 원문DB 구축기관 포함)가 아닌 비영리적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학회가 논문기고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는 경우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업과학분야 102종의 저작권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에서(정경희 2002) 양도동의서를 체결하는 비율은 6.9%에 지나지 않았고, 투고요령에만 명시하는 경우는 29.5%였으며, 저작권 계약 사항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저널은 67.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농업과학분야 이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고 본다.

당연히, 저작권 계약 사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경우는 저작권이 연구자에게 있으며, 투고요령에 명시한 경우라도 원저작자인 연구자와 출판사 혹은 학회 간에 저작권과 관련한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학회나 출판사가 아닌 저작자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학술지의 개개 논문을 원문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게 되는 경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연구자가 자신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되는 것에 대해 동의서를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동의서에는 저작권에 대한 전부 양도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sup>34)</sup>.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라도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 저작물<sup>35)</sup>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저작권법 제 45조).

33) 상업저널들은 자신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자들에게 이른바 ‘잉겔핑거의 법칙(Ingerlfinger Rule)’이라는 이중게재금지 및 엠바고 등에 대한 각서를 받는다. 잉겔핑거의 법칙은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의 편집자였던 프란츠 잉겔핑거가 다른 곳에 이미 게재했던 논문은 자신의 저널에 실을 수 없다고 공표한 데서 비롯된 학계의 불문율이다.

34)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자와 양수인 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저작권이 양도되면 그 때부터 저작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저작권의 양도는 그 전부가 양도될 수도 있고, 일부가 양도될 수도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분할하여 양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양도의 조건 내지 범위는 원칙적으로 양도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35) 미국 저작권법 제 101조는 ‘2차적 저작물이란 번역물, 음악적 편곡물, 드라마화물, 소설화물, 영상화제작물, 녹음물, 미술 복제물, 요약물, 축약물 혹은 어느 저작물이 개작 변형 또는 각색된 어느 다른 형태와 같이 하나 이상의 기존 저작물을 기초로 작성된 저작물이다’고 2차적 저작물을 정의하며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5조 1항은 2차적 저작물을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과 독립된 별개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유형화되어 있으며, 2차적 저작물 그 자체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등과 같이 저작물의 한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 ②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저작권의 지분권 중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양도인에게 그대로 잔존<sup>36)</sup>하게 되므로 연구자는 여전히 원문데이터베이스에 구축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자이며, 별도의 계약이 없는 모든 원문DB는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전송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위의 경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연구자는 무방식주의에 의해 연구논문 작성과 함께 저작권을 가진다. 학회는 저작권 위임 동의서를 받았을 경우 학회지에 인쇄형태로 출판할 출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할 권리(제 45조)나 디지털화할 권리(제 16조), 더구나 제 3자(원문DB 구축업체)에게 양도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제 46조 2항). 학회가 연구자로부터 논문의 모든 권리를 이양 받고, 또한 2차적 저작물을 생성할 권리까지 이양 받았다고 할 경우에(제 45조 2항) 원문 DB 구축업체에 논문을 디지털화 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원문 DB구축업체는 디지털화권을 학회로부터 받아 학회논문을 디지털화하였을 경우 원문 DB구축업체는 이용허락의 범위로 ‘원문DB로 구축되어 도서관 및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배포되는 것’을 허락받은 것이다. 저작권법은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용허락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저작권법 제 46조 참조, 제 18조 참조) 지식거래소에 거래할 권리를 양도받지 않았다면, 공중송신권을 어긴 것이며, 저작물의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Westlaw는 원저작물의 DB 입력에 앞서 각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얻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일반적으로 학회는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는 문구로 연구자로부터 저작권 위임 동의를 받지만, 여기에서 ‘모든’의 범위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3 국가 및 공공기관 제공

최근 들어 포털들이 전문기관과 연계해 검색서비스 DB를 확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털의 검색 DB 서비스로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외교통상부, 소방방재청, 강남구청, 통계청 국가 통계정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금융감독원 금융정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인명부 DB 등 굵직한 DB들을 확보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sup>37)</sup>.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자료들을 상업적인 포털에 넘겨줌에 있어서 공공정보자료의 저작권, 공용의 목적으로 개발된 서지DB의 저작권, 공용의 목적으로 개발된 원문DB의 저작권 등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단순 열람이나 복사에 그칠 뿐, 국민의 공공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재이용을 통한 상업적인 활용을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다<sup>38)</sup>.

36)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까지 모두 양도받기 위해서는 양도계약시 양도 대상이 되는 권리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특정시켜야 한다. 예컨대, ‘모든 저작권’ 또는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했을 때, 앞서의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할 권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차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종류나 이용 방법을 예상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내용의 권리를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

3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143478&section\\_id=105&menu\\_id=105](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9&article_id=0000143478&section_id=105&menu_id=105)

또한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구축한 모든 공공정보자료의 저작권이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저작권법 제 9조), 공공기관이 위탁하여 작성된 연구보고서의 저작권과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서비스될 경우 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지라도 지식거래스에 제공되어 이용될 경우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재이용을 통한 상업적인 활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국립중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공공도서관들이 공동으로 구축한 서지데이터베이스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중심이 되어 구축된 KERI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그리고 기타 공동 사용을 목적으로 공동 구축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들은 공동으로 창작한 공동저작물로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러한 저작물을 구축하는데 참여한 기관은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또한 제 3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권리 모두를 가진다(저작권법 제 15조). 따라서 이들 기관들이 서지 정보DB나 원문DB를 지식거래스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참여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제 3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특히 목록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별목록레코드의 경우, 단순한 사실만을 입력한 것이 아니라 편목자가 상당한 전문교육과 경험을 통하여 획득한 전문지식 및 지적 판단을 통하여 작성하므로, 개별목록레코드는 원저작자의 저작물로서 충분히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으로 구축된 서지DB 또는 원문DB는 공동저작권자들의 이용허락을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서는 지식거래스에 제공할 수 없다고 본다.

#### 4.4 출판사 제공

출판사는 주로 전자책을 지식거래스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출판사 즉, 출판권자들은 거래되는 전자책의 저작권을 해결한다. 즉, 출판사인 출판권자는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복제권자로부터 책으로 출판하거나 전자책으로 출판할 권리를 설정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책으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 책이라도 전자책으로 출판할 권리를 갖지 못했다면, 전자책으로 출판할 권리와 이를 인터넷에서 전송할 권리에 대한 계약을 다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22조, 59조; 김기태 2000). 또한 3.7절에서 설명되었던 원저작자의 권리는 저작물의 매체 변환 과정을 통해 지속된다는 저작권법 제 45조의 적용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 4.5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이 해결된 소재(素材)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함에 있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에 저작권법에 의해 편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저작권법 제 2조 18, 19, 20항). 그러나 앞서 설명한 Feist 사건을 계기로 소재의 선택, 정리, 배열의 독창성을 기반으로 한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

38) 상업적인 포털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하더라도 이 데이터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포털로 유인하였다면, 광고료를 비롯한 기타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및 국가기관의 데이터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 할 수 있다. 포털들의 광고수입이 50%이상임을 감안할 때 이용자 수의 증가와 상업적인 이익간에 충분한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가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식거래소에 제공할 경우에는 문제는 없다.

#### 4.6 OSP로서의 지식거래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인 지식거래소는 저작권을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 상당히 자유로움을 알 수 있다. OSP는 인터넷이 활성화 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OSP가 자신의 서버에 등록된 또는 거래되는 수많은 파일을 검토하고 감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OSP가 책임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장치를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마련해 두고 있다.

즉, OSP는 저작물의 권리주장자가 본인의 저작물이 불법 복제·전송되고 있으므로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경우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고 복제·전송자에게 이를 통보하면,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즉시 복제·전송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자로서 책임감면을 받을 수 없다.

위의 내용을 기반으로 볼 때, 지식거래소는 개인들이 지식거래소에 어떠한 콘텐츠를 올리더라도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 검증할 수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려올 경우에만 대처를 하면 된다. 즉 지식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우며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개인 거래자에게 있다.

또한, OSP인 지식거래소는 서지DB 제작업체, 원문DB 구축업체, 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구축한 DB를 제공하여도 각 업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통해 지식거래소에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그들을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로 간주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각 DB에 수록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학회지의 저작권이 해결되지 않은 논문이 지식거래소에서 유료로 판매되고 있다(라도<sup>39)</sup> 지식거래소는 저작권을 침해한 주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많은 저작권자들, 특히 학술지의 저작권자들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확보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저작물의 유통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정보교류를 원활하게 하기를 원한다. 즉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학문분야에서 자신의 업적에 대한 인정을 받거나 자신의 논리를 전파하는 것과 같은 형식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실제에 있어 저작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용자는 출판사나 원문DB 구축업체에게 상당히 높은 사용료를 지불하고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인터넷의 편리함과 포털이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수많은 정보제공기관들의 정보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는 높은 접근성을 높이 평가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개개의 저작권자들의 권리는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내 지식거래유통의 양성화와 편리한 접근성이 아닌 원저작자의 보호를 통한 활발한 제2의 창작을 위해서 저작권자의 보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특히 본 연구에서 지적하고

39) 실제로 지식거래소에서는 학회지의 논문이 상당히 높은 가격(2천원~5천원)에서 판매되고 있다.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분별하여 지식거래소의 지식유통이 이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지식거래소를 통해서 유통되고 있는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지식거래소에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는 수많은 개인, 원문DB 제공업체, 국가 및 공공기관, 출판사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적인 지식거래소에 제공되는 다양한 지식콘텐츠들의 저작권 문제를 거래유형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개인 제공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은 개인에게 있으나 창작성이 없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경우는 저작권에 위배가 된다.

둘째, 원문DB 구축업체가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독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에 문제가 없으나, 다양한 분야의 학회로부터 학술지의 논문을 받아 원문DB로 구축하여 제공하는 경우 각 학회로부터 새로운 서비스 방법을 통해 제공할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양 받지 않았다면, 새로운 매체에 의한 정보 제공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각 학회는 원문DB 구축업체에게 디지털화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논문의 저자들로부터 2차적 저작물 생성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셋째, 국가 및 공공기관에 의해 제공된 경우, 공공기관의 저작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동으로 구축된 서지DB 또는 원문DB는 공동저작권자들의 이용허락을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서는 지식거래소에 제공할 수 없다.

넷째, 출판사는 주로 전자책을 지식거래소에 제공한다. 대부분의 경우 출판사 즉, 출판권자들은 거래되는 전자책의 저작권을 해결한다. 즉, 출판사인 출판권자는 저작물의 원저작자인 복제권자로부터 책으로 출판하거나 전자책으로 출판할 권리를 설정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섯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저작권이 해결된 소재(素材)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함에 있어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경우에 저작권법에 의해 편집물로서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가 창작성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지식거래소에 제공할 경우에는 문제는 없다.

여섯째, 지식거래소는 지식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우며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개인 거래자에게 있다. OSP인 지식거래소는 서지DB제작업체, 원문DB구축업체, 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구축한 DB를 제공하여도 각 업체 또는 기관과 계약을 통해 지식거래소에 콘텐츠를 유통시키고 있으며, 그들을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로 간주하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각 DB에 수록된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의문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된 서지데이터베이스 및 원문데이터베이스들이 상업기관의 포털로 넘어가야 하며,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창구를 상업 포털로 하여야 하는가? 웹 2.0 트렌드와 함께 성장하는 포털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차별화된 지식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국가적인 정보유통기관들이 또 하나의 포털(다른 수많은 포털중의 하나가 되더라도)로서 학술정보 포털이라는 차별화된 창구는 마련할 수는 없는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구자들은 본인들의 연구 성과가 널리 이용되기를 바라지만 결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를 원치 않으며, 더구나 고가의 비용으로 인하여 이용 장벽을 높이는 것은 더 더욱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오픈엑세스 운동을 하고 Creative Commons, RoMEP 프로젝트, DSpace시스템, 국내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무 조건 없이 쉽게 주어버린 권리를 다시 되찾기 위한 힘든 투쟁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제는 상업적인 DB구축업체 뿐만 아니라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지식거래소와의 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수십 년간 구축된 서지정보를 너무나 쉽게 내어 주고 나중에 얼마나 어렵게 되찾아 오려 노력할지, 아니 어쩌면 그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할지 모른다.

국민들의 지식수준의 향상과 인류문화의 발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다방면의 지식정보유통 주체들, 특히 국가적인 지식정보유통기관들은 연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식정보유통의 양성화를 위해 저작권 문제에 보다 깊이 있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연구에서는 지식거래소가 활성화됨에 따라 도서관·정보센터의 위상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국민들의 지식정보화 수준에 악영향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권은경. 2002. 학술잡지 출판의 변화에 의한 학술커뮤니케이션 개선방안-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1): 75-95.
- 김기태. 2000. 뉴미디어의 기술진전과 저작권 보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 김윤명, 정준민. 2002. 디지털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 개정 저작권법(안)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2): 181-201.
- 김은기. 1998. 전자상거래에서의 저작권문제. 『외법논집』, 5: 203-226.
- 노영희. 2006. 인터넷 지식거래소의 현황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3): 21-41.
- 노영희. 2007. 인터넷 지식거래소의 지식정보유통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발간예정.
- 노진섭. 2004. 온라인 지식시장 연 3백% 급팽창. 『비즈넷타임즈』, 2004. 11. 22.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apbuu&folder=16&list\\_id=3860377](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kapbuu&folder=16&list_id=3860377)>.
- 박미성. 2005. 오픈엑세스를 위한 저작권관리시스템 사례연구를 통한 dCollection 라이선스관리시스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4): 255-284.
- 박홍진. 2002. 저작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19: 409-427.
- 신은자. 2001. 전자저널의 가격모형과 가격책정 현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39-54.
- 신재호. 2004. 著作権法の基本原理에 대한 再照明. 『비교사법』, 26: 603-628.
- 심화영. 2005. ‘저작권법’ 비친고죄 반대 교수·변호사 100여명 서명. 『디지털타임스』, 2005. 12. 30.
- 오병일. 2006. 저작권에 의해 강화되는 문화적 통제. 『문화과학』, 45: 306-313.
- 유수현, 한상완. 2004. 대학도서관의 저작권 수용 정책 표준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23-345.
- 윤준수. 1998.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 특성에 기반한 혼합형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 이대회. 2005.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법적 접근 방안의 연구. 『비교사법』, 31: 653-681.
- 이두영 외. 1997. 연구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과학재단.
- 이두영, 강순희. 웹 검색엔진의 지식검색커뮤니티 기반 지식관리에 관한 연구. 『제 10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43-152.
- 이미경. 2004. 『인터넷기업 성공법칙 37: 아이디어로 도전하고 원칙으로 승부하라』. 서울: 제우미디어.
- 이상정. 2003. 인터넷환경에서의 지적소유권법제의 체계와 과제. 『한국인터넷법학회』, 2: 407-427.
- 이제환, 황혜선. 1997. Full-text DB의 구축과 저작권 문제. 『도서관학논집』, 26: 169-204.
- 이제환. 1994. 서지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문제가 문헌정보의 유통에 미치는 영향. 『도서관학논집』, 21: 325-361.

- 이중호, 이광호, 이흥복. 2003. e-Business의 효율적 지식시장 형성에 관한 고찰. 『경영교육논총』, 29: 313-324.
- 정경희. 2002. 정보공유적 모델 기반의 학술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연구: 저작권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9(4): 383-399.
- 정국환 외. 1997. 『정보사회의 지식재산권개념 재정립』. 경기: 한국전산원.
- 정진호. 2005. 지식거래시장 뜬다...100여개 성행, 100억 원 대 시장 성장. 『아이뉴스24』, 2005. 01. 31.
- 제일경제신문. 2005. 인터넷 지식거래 시장이 뜬다. 『제일경제신문』, 2005.03.02.
- 조성중. 2003. 인터넷상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20: 637-674.
- 조소연, 안계성. 1999. 공공정보자료의 저작권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999. 8: 167-172.
- 최미정. 포털과 도서관의 연계: 도서관 네이버 연계에 대한 고찰.
- 한지영. 2006. 정보수집물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과 판례 동향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13(1): 705-739.
- 현대경제연구원. 2001. 선진국의 지혜 거래소 현황과 문제점. 『새로운 지식과 정보』, 통권 제 8호: 11-16.
- 홍재현, 정경희, 이호신. 2005. 도서관에서의 복제 및 전송에 관한 저작권 지침 개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505-525.
- 홍재현. 1993. 서지 유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10(2): 111-143.
- 홍재현. 1997.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디지털복제와 공정사용 범리적용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1(4): 139 -164.
- 홍재현. 2004. 도서관간 복제·전송에 의한 디지털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면책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93-119.
- 홍재현. 2005. 상호대차에 의한 원문복사서비스의 도서관 면책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2(1): 21-45.
- 황옥경, 이두영. 2004. 디지털 자원에 대한 저작권과 계약간의 충돌관계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3): 125-139.
- 황찬연. 1997. 전자도서관과 저작권. 『정보과학회지』, 15(12): 17-21.
- Allexperts. <http://www.allexperts.com>
- Davenport & Prusak. 1998. *Working Knowledge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Jupiter Communications. 1998. *Consumer Internet Economy*. New York: Jupiter Communications.
- OCLC. 1985. *Transfer of OCLC-derived Machine-Readable Records to Third Parties: Principles and Guidelines*. Dublin, OH: OCLC.
- Probst. 1999. *Managing Knowledge: building blocks for success*. New York: John Wiley & Sons.
- World Trade Organization. 1998. *Trading into the Future: Introduction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2nd edition. Geneva: World Trade Organization.